

	임산물생산업	육림업
지급제외산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유림, 공유림 • 산지전용·일시사용 허가·신고한 경우(산나물, 산약초 등 산림관상식물재배에 따른 50cm 이상 절·성토, 임도, 작업로, 운재로 등 제외) • 신청한 연도에 농업 분야 기본형공익직불금을 등록 신청한 산지 • 주거·상업·공업지역, 산업단지, 농공단지, 택지개발지구, 개발사업 예정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산지 • 휴경 중인 산지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등록신청 연도에 육림업 직접지불금 등록신청 산지 • 일시적인 채취행위에 의한 임산물생산지 * 단, 송이, 죽순, 수액 등은 산림청장이 고시한 방법으로 관리 생산하는 경우는 인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등록신청 연도에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등록신청 산지 • 자연휴양림, 백두대간보호지역, 공원구역, 상수원보호구역 등 법정 제한 산지
지급제외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·임차·사용차, 분할·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(단, 상속, 직계존비속 증여 등은 제외) • 농업 외 종합소득액 3,700만원 이상인 자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농업 소농직불금 수급자, 구성원(신청 직전 연도에 한함) • 자기 소유가 아닌 산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본인의 소유가 아닌 산지를 신청한 자 (공유 지분 경우 자기 지분이 아닌 타인 지분도 지급 제외)
의무준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산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할 것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목의 생육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·관리 - 산불예방활동, 자생식물보호,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활동 실시 - 이웃한 산지와 소유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 설치·관리 • 농업경영체 경영정보에 대한 변경신고를 할 것 • 영림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할 것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임업·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• 산지 및 주변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 • 농약, 분뇨, 퇴비, 액비 적정 사용, 비료보관, 지하수 개발 • 생태계교란 생물의 반입·사육·재배 등을 하지 않을 것 • 산사태, 산림병해충 예방 활동을 실시할 것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농약 및 화학비료를 적정 수준 사용 • 임산물 생산·유통·판매 시 유해물질 잔류허용량 안전기준 준수 • 임산물 출하제한, 폐기·용도전환·출하연기 준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해예방을 위해 임도, 진입로, 작업로를 관리할 것 - 산림경영계획 인가대로 사업시행 • 입목본수 일정 수준 이상 유지
* 미이행 시 각 항목별 10% 감액하여 지급(다수위반일 경우 각각 합산하되 최대 100%, 전년도 위반사항의 반복위반은 2배 적용·최대 40%)		

기관별권한	지방산림청	지자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·등록신청, 지급대상자의 등록, 등록사항의 변경 등록·신고 등에 대한 위법행위 조사 • 지급제한, 등록제한, 부당이익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징수 등과관련된 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·지도 단속, 과태료 부과 • 명예감시원의 위반사항 신고 접수 및 현장 조사, 처리 • 부정수급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 지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임업직불금 지급, 임산물생산업 이용산지 인정 여부 • 지급대상자 등록(변경등록), 산지 일부 취득 신고·지위 승계 신고 접수 • 등록사항에 관한 조사, 지급제한 및 지급대상자 등록제한 • 부당이익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·가산금, 과태료 부과 징수 • 신청자·수령자의 정보공개, 이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·조사·통보 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부정행위조치	벌칙 (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자와 변경등록 신청 또는 신고를 한 자 •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증명하여 준 자 •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과태료 (1천만원 이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조사·수거·열람 등을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• 등록사항 또는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·비치하지 아니한 자 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환수, 제재부가금, 등록 제한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부정수급 종류</th> <th rowspan="2">분류</th> <th rowspan="2">부정수금액</th> <th rowspan="2">제재부가금</th> <th colspan="3">등록제한</th> </tr> <tr> <th>소규모임가</th> <th>면적</th> <th>육림업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</td> <td>등록</td> <td>-</td> <td>-</td> <td>5년</td> <td>3년</td> <td>3년</td> </tr> <tr> <td>수령</td> <td>전액환수</td> <td>5배</td> <td>8년</td> <td>5년</td> <td>5년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 등을 양도·임대·분할 등</td> <td>등록</td> <td>-</td> <td>-</td> <td colspan="3">3년</td> </tr> <tr> <td>수령</td> <td>전액환수</td> <td>3배</td> <td colspan="3">3년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부정수급 종류	분류	부정수금액	제재부가금	등록제한			소규모임가	면적	육림업	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	등록	-	-	5년	3년	3년	수령	전액환수	5배	8년	5년	5년	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 등을 양도·임대·분할 등	등록	-	-	3년			수령	전액환수	3배	3년	
부정수급 종류	분류	부정수금액					제재부가금	등록제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소규모임가	면적	육림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	등록	-	-	5년	3년	3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수령	전액환수	5배	8년	5년	5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 등을 양도·임대·분할 등	등록	-	-	3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수령	전액환수	3배	3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